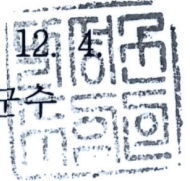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89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2. 4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민법 제77조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39조(해산) 규정에 따라 2019. 12. 18.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9. 12. 31.자 재단 사무가 종료되었고, 2020. 1. 1. 청산 개시로 2020. 6. 25. 청산 종결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 제32조, 제77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20. 10. 19. ~ 11. 8.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77조(해산사유)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,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,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